

광주지방법원 2024. 8. 1 선고 2023가단51199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원

피 고 B
변 론 종 결 2024. 6. 20.
판 결 선 고 2024. 8. 1.

주 문

-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. 12. 1.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23,840,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- 피고는 원고에게 23,84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주장은 별지 각 ‘청구원인’ 기재와 같고, 갑 제1 내지 5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감정인 D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.

이에 대해 피고는 사해행위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,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고는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.

판사 윤봉학

별지